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노인인권기본법안

검 토 보 고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11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주요 조문별 검토	8
가. 기본이념(안 제2조)	8
나. 정의(안 제3조)	10
다. 노인의 권리(안 제4조)	13
라.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안 제8조)	15
마. 노인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안 제12조 등)	17
바.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설치(안 제15조)	19
사. 노인의 권리 보장(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22
아. 부칙	23

I.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11. 11.

다. 회 부 일 : 2025. 11. 12.

2.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1.7명, 노인빈곤율은 약 40%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에서 의식주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을 신장하여 노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노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에 포용·통합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함(안 제6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정책 개발 등에 노인과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0조).
- 마. 노인인권을 위한 연구사업, 실태조사, 노인인권영향평가 및 노인인권통계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노인에 대하여 안전한 삶을 유지할 권리,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자기결정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건강권,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 참여할 권리 등 노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II. 검토 의견

1. 총괄적 검토

- 「노인인권기본법안」(5개 장, 27개 조로 구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등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안 제4조).
- 둘째, 구체적인 노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18조),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안 제19조), 자기결정권(안 제20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21조), 건강권(안 제22조),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안 제23조), 참여할 권리(안 제24조), 교육과 문화 등의 향유(안 제25조)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셋째,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노인인권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도록 하고(안 제15조), 매 5년마다 노인인권종합계획을 수립(노인인권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함(안 제8조).
-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안 제12조), 그 외 노인인권영향평가(안 제13조) 및 노인인권 통계 작성·관리(안 제14조) 등에 대해 규정함.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노인의 권리 (안 제4조)	◦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 노인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할 권리 ◦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등
노인의 날 (안 제6조)	◦ 매년 10월 2일
노인인권종합계획 (안 제8조)	◦ 정부는 매 5년마다 수립 ◦ 노인인권 보장 목표, 직전 종합계획 평가 등 포함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
노인실태조사 (안 제12조)	◦ 복지부장관은 매 3년마다 노인인권 실태조사 실시
노인인권영향평가 (안 제13조)	◦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 제·개정 등에 대한 평가
노인인권통계 (안 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인권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노인인권정책 위원회 (안 제15조)	◦ 국무총리 소속 ◦ 노인인권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심의·조정 ◦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되,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노인의 권리 보장 (안 제18조~ 제25조)	◦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18조) ◦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안 제19조) ◦ 자기결정권(안 제20조) ◦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21조) ◦ 건강권(안 제22조) ◦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안 제23조) ◦ 참여할 권리(안 제24조) ◦ 교육과 문화 등의 향유(안 제25조)

-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향후에도 급속도로 노인 인구의 수와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1981~2070) >

(단위: 세, %, 생산가능인구 백명당)

구 분	1981	1998	2025	2050	2070
기대수명	66.7세	75.1세	84.5세	88.6세	90.9세
65세 이상 비율(A)	3.9%	6.4%	20.3%	40.1%	46.0%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B)	62.8%	71.6%	69.5%	51.9%	47.5%

* 자료: KOSIS 인구조보 보는 대한민국

- 이러한 가운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8%로 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추이(2019~2023) >

(단위: %)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노인빈곤율	41.4	40.4	37.6	38.1	39.8

* 자료: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OECD, 2023.12.

- 아울러,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현황을 보면, 노인학대로 신고된 2만 2,746건 중 31.5%에 해당하는 7,167건이 노인학대로 판정된 바, 이는 2020년 6,259건 대비 14.5%나 증가한 것임.

<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2020~2024) >

(단위: 건, %)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고건수	16,973	19,391	19,552	21,936	22,746
학대판정 (%)	6,259 (36.9%)	6,774 (34.9%)	6,807 (34.8%)	7,025 (32.0%)	7,167 (31.5%)

* 자료: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법」 등 현행 노인 관련 법 체계는 노인을 권리주체 보다는 보호 및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정안은 노인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울러 노인 정책 수립 및 관련 입법의 기본적인 틀로서 노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신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국제연합(UN)은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¹⁾을 수립하였고, 2025년 4월 3일에는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규범 마련을 위한 실무그룹을 설립하는 내용의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음.
- 다만, 노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른 법 규정 방식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노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이 법률의 적용대상으로서 노인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는 것의 문제와 함께,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실태조사’(제5조), ‘노인정책영향평가’(제5조의2), ‘노인의 날’(제6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정안도 ‘노인인권실태조사’(안 제12조), ‘노인인권영향평가’(안 제13조), ‘노인인권의 날’(안 제6조)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임.

1)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이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며, 착취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으며, 모든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인 인권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국제적 지침(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현행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④ (생략)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기본이념(안 제2조)

- 제정안에서는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모든 활동에 있어 독립성과 참여의 기회 보장’, ‘돌봄 및 보호 보장’, ‘연령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금지’를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모든 형태의 학대·유기·방임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존엄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노인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돌봄 및 보호를 보장받는다.
④ 노인은 연령, 성별, 인종, 장애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권리실현에 있어 적극적 조치를 보장받는다.

- 같은 조제1항의 안전하게 살 권리, 제2항의 참여의 기회 보장 등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기본이념 규정(제2조)과 유사하나 권리를 강조하면서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고, 돌봄 및 보호 보장, 연령 등 차별 금지 사항은 「노인복지법」은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임(안 제3항·제4항).

<현행 「노인복지법」 기본이념 규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본이념 규정은 제정안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제도 등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한 것이나, 돌봄 및 보호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제3항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정의(안 제3조)

- 제정안은 ‘노인’, ‘연령차별’, ‘교차차별’, ‘취약계층 노인’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안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연령차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하여 노인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나이를 이유로 한 괴롭힘
 - 나. 나이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합리성 또는 정당성이 없이 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
3. “교차차별”이란 나이와 성별, 인종, 장애, 출신 국가 등 다른 차별 사유가 중복 결합하여 노인에게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취약계층노인”이란 빈곤노인·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말한다.

- 먼저, 제정안(제3조제1호)은 노인을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음.

- 현행법상 노인에게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부재한 가운데, 대체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²⁾의 경로우대 조항을 참고하여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으나, 그 기준은 분야별로 상이한 실정임.

2)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 기준연령 관련 법률 현황 >

분야	제도·서비스	기준연령	근거규정	관련법률	비 고
소득· 일자리	국민연금 수급 개시	63세	법률	국민연금법	2034년까지 65세로 상향
	기초연금	65세	법률	기초연금법	
	노인일자리	65세	지침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는60세 기준
	정년 및 고령자고용 지원	60세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경로우대자 세액공제	70세	법률	소득세법	
서비스	경로우대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법률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보험	65세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대상
	노인맞춤돌봄	65세	지침	노인복지법	
보건· 의료	국가예방접종	65세	고시	감염병예방법	
	노인외래정액제	65세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치매검사비 지원	60세	지침	치매관리법	
주거· 교통	주택연금	55세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고령자 복지주택	65세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75세	법률	도로교통법	

□ 「노인복지법」 상 65세 규정은 1981년에 도입되었고 당시 기대수명이 66.7세이었으나, 현재 고령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 주관적으

로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의 경우 평균 71.6세로 조사된 바 있음.

<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

(단위: 세, %)

71.6세	69세 이하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응답자 평균	20.9%	44.6%	21.4%	13.0%

* 자료: 「2023년도 노인 실태조사」

- 제정안에서는 취약계층 노인의 범주로 빈곤노인·여성노인·장애노인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독거노인의 비중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이를 추가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3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13만 8,107 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65세 인구 중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임.

다. 노인의 권리(안 제4조)

- 제정안에서는 노인의 기본적 권리로써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착취·가혹행위·유기·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노인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할 권리,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등 14가지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제4조(노인의 권리) 노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1.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
2.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경제적 착취, 가혹행위·유기·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4.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5. 생애계획 및 일상생활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
6. 인간다운 생활과 건강을 보장받기 위하여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7. 인간다운 생활과 자아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8.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9. 노인정책의 수립·시행에 참여할 권리
10.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
11.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예술을 향유할 권리
12. 격차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권리
13. 삶과 죽음에 관하여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14.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노인의 권리

- 구체적으로 보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제4호) 등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외에, 자아실현을 위한 안전한 환경의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제7호),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제10호) 등도 노인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노인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노인정책 수립 및 관련 입법의 기본적인 틀로서 노인의 삶의 질과 권리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제7호),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제10호) 등과 관련하여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가족구조 및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돌봄과 요양을 받을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권리 인정에 따른 채원 확보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 그 외 존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권리(제1호), 생애계획 및 일상생활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제5호), 삶과 죽음에 대한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제13호) 등의 경우 문리적으로 일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라.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안 제8조)

- 제정안은 정부가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노인인권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면서, 노인인권종합계획에는 노인인권 보장 목표와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

제8조(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노인의 인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인권 보장 목표와 방향
2. 노인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노인정책의 기본 방향
3.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4. 노인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정비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노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노인인권 증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제15조에 따른 노인인권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로드맵으로서 노인인권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우선, 노인인권종합계획에는 노인인권 보장 목표와 방향, 노인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제8조 제2항)하고 있는데,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확정된 노인인권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해당 조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에서 5년마다 노인인권을 포함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5년마다 노인의 건강증진, 고용과 소득 보장, 안전보장 등 노인인권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시행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마. 노인인권실태조사 실시 등(안 제12조 등)

- 제정안은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하고(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며(안 제12조), ‘노인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3조).

제6조(노인의 날) ① 노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중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인권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권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노인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노인인권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제도 등이 노인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인권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노인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인권실태조사 및 노인인권영향평가 실시 규정은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에 적시에 반영하고, 노인인권정책 실시로 인한 부작용이나 예기치 못한 효과를 방지할 필요성과 함께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를 위한 계기 마련 등을 고려할 때 이들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 「노인복지법」에 ‘노인실태조사’(제5조), ‘노인정책영향

평가’(제5조의2), ‘노인의 날’(제6조) 등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행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노인정책영향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노인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실태조사와 노인정책영향평가에 인권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에서 매년 10월 2일을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바.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설치(안 제15조)

- 제정안은 노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노인인권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두도록 하면서, 노인인권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요 노인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5조(노인인권정책위원회) 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노인인권정책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노인인권 증진, 차별금지,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인 학대방지 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노인인권 관련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6. 노인인권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노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거나 노인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조정 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인권 증진 문제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과도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음. 현행 「아동복지법」(제10조) 상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³⁾’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음.

□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도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원회의 위원 수와 관련하여 제정안(제15조제3항)에서는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겠음.

<제정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

조 문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
제18조	노인 자살과 고독사 방지 정책 수립·시행
제19조	노인에 대한 혐오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노인 연령차별 및 교차차별 해소 노력
제21조	노인 고용촉진·고용평등 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노인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제23조	돌봄 권리 보장 및 지원
제24조	노인정책 수립·시행 시 노인 참여 보장 및 의견 반영 노인자조단체 활동 지원
제25조	교육·문화 등에 노인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정책 수립

3) 「아동복지법」(제10조) 상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제11조) 상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달리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정책조정에 관한 위원회 규정이 없는 상황임.

- 해당조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현행 인권 및 저출산고령화 관련 법령(「국가인권위원회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리체계(국가인권위원회, 저출산고령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입법 취지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원회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위원회 신설보다는 보건복지부 타 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 등을 우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사. 노인의 권리 보장(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노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18조),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안 제19조), 자기 결정권(안 제20조),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안 제21조), 건강권(안 제22조),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안 제23조), 참여할 권리(안 제24조), 교육과 문화 등의 향유(안 제25조)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조 문	주 요 내 용
제18조	폭력 등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제1항) 기후위기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제2항)
제19조	연령차별과 교차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제1항) 누구든지 혐오표현 금지(제2항)
제20조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제1항)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제2항)
제21조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권리(제1항) 주거·의료 등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제2항) 국가 등은 필요 정책 수립·시행(제3항)
제22조	최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제1항)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제2항) 의료적 치료 등의 과정에 명확한 설명 제공(제3항)
제23조	거주지와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제1항) 거주지역과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적절한 돌봄 및 요양 제공(제2항)
제24조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 참여할 권리(제1항) 노인 정책에 노인의 의견 최대한 반영(제3항)
제25조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제1항) 문화·예술 등 참여·향유할 권리(제2항)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정책의 수립·시행(제3항) 교육·문화 등을 참여·향유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시행(제4항)

- 위 표를 보면 제정안에서는 세부적으로 12가지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특히 돌봄 및 요양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거주지역과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적절한 돌봄 및 요양을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함.
- 이러한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당 규모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제정안과 같이 노인의 권리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안 외에 노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른 법 규정 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노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수준까지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제정안과 같이 노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법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한 삶이나 적정 수준의 건강 및 돌봄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도 고려는 필요해 보임.

아. 부칙

- 제정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충실한 제도 시행 준비를 위해 적정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겠음.
- 보건복지부에서도 노인인권정책위원회, 실태조사 등 규정을 내실 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입법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499